

2026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지표

2025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2026년)

B. 주요 개편 사항

- (개편)서류중심 평가에서 '위험성평가 및 TBM 활성화 지도'의 개편을 통한 현장중심 평가로 전환
 - 기술지도보고서 작성 시 위험성평가 활용 및 관련 배점 조정(B.1.①,②,③)
 - 근로자 면담, 현장비치 서류 확인 등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B.1.③)
 - 현장 작동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기술자료 배포 등)·장비 활용·재정지원' 지표를 신설하여 사업장(근로자) 맞춤형 기술지도의 적정성 평가(B.1.④)
- ※ 가점 내 고위험공사(지붕 개·보수, 외부도장, 철거·해체 및 리모델링)관리에 대한 세부지표를 신설하여 기관의 적극적인 기술지도 실시 유도(D.1.①)

■ : 신설지표, ■ : 지표이동, ■ : 지표통합

분야	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 점	
			전국 단일	지도사
	합 계		1,000	1,000
A. 운영 체계 (200)	소계		200	100
	1.운영 관리	①운영규정·기술지도 매뉴얼 적정성	50	25
		②연간 사업계획 수립·실행의 적정성	50	25
	2.인력 관리	①고급인력 확보	50	-
		②역량개발 노력 ⇒A.1.①, D.1.① 이동	50	50
B. 업무 충실성 (500)	소계		500	600
	1. 위험성 평가	①유해위험요인 정보 파악의 적정성	100	150
		②위험성 감소대책의 적정성	100	150
		③위험성 감소대책 개선실적 및 TBM 활성화 지도	100	150
	2.위험 요인 관리	①기술지도 보고서의 적정성	50	50
		②향후 공정 재해예방대책 적정성 등	50	50
		③위험성 감소대책 미이행 사업장 관리	100	100
C. 업무 성과 (300)	소계		300	300
	1.재해 감소	①사고사망 만인율 감소 성과	100	100
		②사고사망 만인율 수준	100	100
		③사고 재해율 수준[삭제]	50	50
	2.만족도	①사업장 만족도	50	50
D. 가감점 (±100)	소계		±100	±100
	1.가점	①포상, 기관별 우수사례 및 적정 수수료 계약율 등	+100	+100
	2.감점	①K2B 입력 부적정률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100	-100

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 점		비고
		전국 단일	지도사	
합 계		1,000	1,000	
소계		200	100	
1.운영 관리	①운영규정·지침·교육계획 수립·이행 ⇒前 A.1.①, A.1.②, A.2.②	100	100	지표 통합 배점 상향
2.인력 관리	①고급인력 확보	100	-	배점 상향
소계		550	650	
1. 위험성 평가	①유해위험요인 정보 파악의 적정성	100	125	지도사 배점 상향
	②위험성 감소대책의 적정성	100	125	
	③위험성 감소대책 개선실적 및 TBM 활성화 지도	50	75	위평지표 강화로 배점 조정
	④근로자 교육 등 유해위험요인 관리의 적정성	100	100	지표 신설
2.위험 요인 관리	①기술지도 보고서의 적정성	50	50	
	②향후 공정 재해예방대책 적정성 등	50	75	지도사 배점 상향
	③위험성 감소대책 미이행 사업장 관리	100	100	
소계		250	250	
1.재해 감소	①사고사망 만인율 감소 성과	100	100	특점 양극화 보완 위해 지표 배점 조정
	②사고사망 만인율 수준	100	100	
2. 만족도	①사업장 만족도	50	50	
소계		±100	±100	
1.가점	①포상, 기관별 우수사례 및 적정 수수료 등 ⇒前 A.2.②	+100	+100	지표 이동 및 세부 지표 신설
2.감점	①K2B 입력 부적정률 및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100	-100	세부 지표 조정

※ 평가대상 기간 내 업무정지 처분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총점 산정 후 등급보다 한단계 하향 조정

□ 2026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지표

분야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지표 적용	
			전국단일	지도사
		합 계	1,000	1,000
A. 운영 체계 (200)	소 계		200	100
	1. 운영관리	① 운영규정·지침·교육계획 수립·이행	100	100
	2. 인력관리	① 고급인력 확보	100	-
B. 업무 충실성 (500)	소계		550	650
	1. 위험성 평가	① 유해·위험요인 정보 파악의 적정성	100	125
		② 위험성 감소대책의 적정성	100	125
		③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실적 및 TBM 활성화 지도	50	75
		④ 근로자 교육 등 유해·위험요인 관리의 적정성	100	100
	2. 위험 요인 관리	① 기술지도 보고서의 적정성	50	50
		② 향후 공정 재해예방대책 적정성 등	50	75
		③ 위험성 감소대책 미이행 사업장 관리	100	100
C. 업무 성과 (300)	소계		250	250
	1. 재해 감소	① 사고사망 만인율 감소 성과	100	100
		② 사고사망 만인율 수준	100	100
	2. 만족도	① 사업장 만족도	50	50
D. 가감점 (±100)	소계		±100	±100
	1. 가점	① 포상, 기관별 우수사례 및 적정 수수료 등	+100	+100
	2. 감점	① K2B 입력 부적정률 및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100	-100

※ 평가대상 기간 내 업무정지 처분(과징금 부과)을 받은 경우, 총점 산정 후 등급보다 한단계 하향 조정

A

운영체계(200점)

1. 운영관리

① 운영규정·지침·교육계획 수립·이행 (10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만족한 경우	☐ 1.0
필수항목 중 1가지 누락된 경우	☐ 0.8
필수항목 중 2가지 누락된 경우	☐ 0.6
필수항목 중 3가지 누락된 경우	☐ 0.4
필수항목 중 4가지 이상 누락된 경우	☐ 0.2

지표정의

체계적인 기술지도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규정·지침·교육계획의 보유 및 실행 여부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관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필수사항에 대하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영규정·지침·교육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반영 및 실행 여부를 평가

☐ 평가 기준

필수항목 (6가지)	반영(최신화)여부	실행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업무 수행 절차 ② 기술지도 수행 표준 매뉴얼 ○ 보유장비(법정+추가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보유장비의 이력카드 작성 ④ 보유장비별 검·교정 주기 설정 ○ 기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직원 교육·훈련 계획 ⑥ 기술자료 활용 계획 및 실적 		

※ 기관의 운영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최하점"으로 평가

확인사항

- ☐ 운영규정(매뉴얼, 지침, 사업계획, 교육·훈련계획) 등 증빙자료

A

운영체계(200점)

2. 인력관리		① 고급인력 확보 (100점/지도사 평가 제외)									
평가기준		평가결과									
[고급인력 평가기준]에 따른 인력											
지표정의											
고급인력 확보를 통해 기술지도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평가내용											
☐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증, 학위증, 임금지급대장 등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대상 기간 중 1/2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고 현장 업무 수행여부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평가 ○ 법적 지정요건 외 기술등급 평가 											
☐ 평가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보유인력의 기술등급 (최대 100점)</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수</th> </tr> </thead> <tbody> <tr> <td>① 건설 관련 박사 또는 기술사(30점×인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점×인원수</td> </tr> <tr> <td>② 건설 관련 석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20점×인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점×인원수</td> </tr> <tr> <td>③ 경력기준에 따른 배점 부여 (최대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분야 근무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 건설안전분야 근무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점×인원수 20점×인원수</td> </tr> </tbody> </table>				보유인력의 기술등급 (최대 100점)	점수	① 건설 관련 박사 또는 기술사(30점×인원수)	30점×인원수	② 건설 관련 석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20점×인원수)	20점×인원수	③ 경력기준에 따른 배점 부여 (최대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분야 근무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 건설안전분야 근무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10점×인원수 20점×인원수
보유인력의 기술등급 (최대 100점)	점수										
① 건설 관련 박사 또는 기술사(30점×인원수)	30점×인원수										
② 건설 관련 석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20점×인원수)	20점×인원수										
③ 경력기준에 따른 배점 부여 (최대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분야 근무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 건설안전분야 근무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10점×인원수 20점×인원수										
<p>※ 배점은 ①~③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되, 보유인력 1명이 2가지 항목 이상 중복 되는 경우 한 가지만 인정</p>											
확인사항											
☐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현황, 학위증, 관련 공문, 재직증명서 등											

B

업무 충실성(550점)

1. 위험성 평가	① 유해위험요인 정보 파악의 적정성 (배점: 100점, 지도사 125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일치하는 항목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 1.0
일치하는 항목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 0.8
일치하는 항목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0.6
일치하는 항목 비율이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0.4
일치하는 항목 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 0.2
지표정의	
기술지도를 위한 건설현장의 기본 현황 파악 및 유해위험요인 정보 파악의 적정성을 평가	
평가내용	
<p>☐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년도 기술지도 현장 10개소(50회차) 이상을 선정하여 기술지도결과보고서 평가 ※ 샘플링 현장은 [B.1.③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실적 및 TBM 활성화 지도] 방문 대상 현장 필수 반영 ○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작성의 적정 및 내용 누락 여부 확인 	
샘플링 현장 선정 기준(예시)	
<p>① 최근 3년 이내 사망사고 또는 1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현장 ② 건설기계·장비 및 유해·위험물질 사용현장 ③ 고위험작업 현장(최근 3년간 사망사고 주요 발생형태(추락, 붕괴, 낙하 등)) ④ 40억원 미만 80%, 4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20%, 120억원 이상(필요 시) ⑤ 불량사업장 통보 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내용의 적정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 	
☐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현장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필수항목별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적정하는 항목 비율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항목에 대한 기술지도가 누락된 경우 "미흡"으로 평가 	
<p>※ (예시) 샘플링 기술지도결과보고서 2개일 경우, A 결과보고서 4개, B 결과보고서 5개 적정한 경우 ⇒ $\{(4+5)/(6 \times 2)\} \times 100 = 75\%$로 "60점" 부여</p>	
< 다음 장 계속 >	

○ 선정 현장에 필수항목이 해당 없을 시 "적정"으로 평가

구분	필수항목	적정	미흡
합 계			
1	대상사업장 관련 정보(공사종류, 세부공정 등 기타사항)		
2	산업재해 발생현황(재발방지 대책 수립 포함)		
3	공종(작업)의 주요 위험요인(위험성 평가 방식 등)		
4	건설기계·장비		
5	위험기계·기구		
6	유해·위험물질		

○ 샘플링 현장에 대하여 기본 정보와 현장 여건이 반영된 유해·위험요인 정보 파악 여부를 평가

< 참고 > 사망사고 다발 12대 기인물과 필수 지도사항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필수 지도사항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필수 지도사항
① 단부.개구부	단부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	⑦ 사다리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② 철골	철골 인양 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⑧ 달비계	구명줄 안전대 체결 2개 고정점 설치(구명줄,작업줄)
③ 지붕	안전난간.발판설치 채광창 덮개 설치	⑨ 트럭	이동구간 출입통제 전담유도자 배치
④ 비계.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외벽 틈 추락방호망 설치	⑩ 이동식 비계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⑤ 굴착기	작업반경 출입통제 후방 충돌방지장치 작동 확인	⑪ 거푸집동바리	시스템동바리 사용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⑥ 고소작업대	안전대 체결 작업대 이탈 금지	⑫ 이동식크레인	인양물 고정 철저 하부 출입통제

확인사항

☐ 방문 현장 기술지도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B

업무 충실성(550점)

1. 위험성 평가 ② 위험성 감소대책의 적정성 (배점: 100점, 지도사 125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적정성 90% 이상인 경우	☐ 1.0
위험성 감소대책 적정성 80% 이상 ~ 90% 미만인 경우	☐ 0.8
위험성 감소대책 적정성 70% 이상 ~ 80% 미만인 경우	☐ 0.6
위험성 감소대책 적정성 60% 이상 ~ 70% 미만인 경우	☐ 0.4
위험성 감소대책 적정성 60% 미만인 경우	☐ 0.2

지표정의

건설현장 기술지도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정을 파악하여 재해발생 유형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 등의 제시가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년도 기술지도 현장 10개소(50회차) 이상을 선정하여 기술지도결과보고서 평가
※ 샘플링 현장은 [B.1.③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실적 및 TBM 활성화 지도] 방문 대상 현장 필수 반영
- 기술지도 현장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위험 공정 파악에 따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위험성 감소대책의 적정성을 평가
-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

샘플링 현장 선정 기준(예시)

- ① 최근 3년 이내 사망사고 또는 1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현장
- ② 건설기계·장비 및 유해·위험물질 사용현장
- ③ 고위험작업 현장(최근 3년간 사망사고 주요 발생형태(추락, 붕괴, 낙하 등))
- ④ 40억원 미만 80%, 4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20%, 120억원 이상(필요 시)
- ⑤ 불량사업장 통보 현장

□ 평가 기준

○ 평가 산식

- 아래 적정성 인정기준 ①~④의 적정, 미흡 여부를 판단하고 가중치를 반영
- 항목별 가중치는 0.1 단위로 차등부여 적용

※ (예시) A현장 "위험성 감소대책 적정성 인정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항목별 반영된 가중치 총합을 산출(B현장, C현장..... 동일방식으로 산출)

☞ 1회차 기술지도결과보고서 ①항목 적정(가중치 0.1), ②항목 적정(가중치 0.3), ③항목 적정(가중치 적용 0.1), ④항목 적정(가중치 0.2)

$$\Rightarrow 0.1+0.3+0.1+0.2= 0.7$$

동일방식으로 2회차 기술지도결과보고서 0.8, 3회차 1, 4회차 0.9

$$\Rightarrow \text{가중치 적용 점수 총합} : 0.7+0.8+1+0.9 = 3.4, \text{기술지도결과보고서 수}$$

$$\text{적정성} : 3.4 / (4 \times 100) = 85\% \Rightarrow 0.8 \times 100\text{점} = 80\text{점}$$

$$\text{위험성 감소대책 적정성} = \frac{\text{가중치 적용 점수 총합}}{\text{기술지도결과보고서 수}} \times 100 < \text{다음 장 계속} >$$

위험성 감소대책 적정성 인정 기준

합 계	적정	미흡	가중치	적용
① 공중 재해유형 대책은 건설현장 기술지도결과보고서 내용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0.2	
② 유해·위험공정 파악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 모두 적정한 경우			0.3	
③ 위험성 감소대책(참고)은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경우			0.3	
④ 위험성 감소대책 제시의 방법·절차가 위험성평가 기법을 적용한 경우			0.2	
합 계				
※ 관리적 사항(교육 및 보호구 관련 대책 제시 등)만 제시한 경우는 불인정				
※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면피용으로 점검표에 체크하는 방식은 불인정				

- 샘플링 현장에 대한 확인사항은 현장 여건이 반영된 기술지도의 적정성과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대책 제시의 과정(위험성평가 등의 안전관리 기법 활용)등을 전반적으로 평가

< 참고 > 사망사고 다발 12대 기인물과 필수 지도사항

구분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필수 지도사항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필수 지도사항
12대 기인물	① 단부, 개구부	단부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	⑦ 사다리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② 철골	철골 인양 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⑧ 달비계	구명줄 안전대 체결 2개 고정점 설치(구명줄작업줄)
	③ 지붕	안전난간, 발판설치 채광창 덮개 설치	⑨ 트럭	이동구간 출입통제 전담유도자 배치
	④ 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외벽 틈 추락방호망 설치	⑩ 이동식 비계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⑤ 굴착기	작업반경 출입통제 후방 충돌방지장치 작동 확인	⑪ 거푸집동바리	시스템동바리 사용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⑥ 고소작업대	안전대 체결 작업대 이탈 금지	⑫ 이동식크레인	인양물 고정 철거 하부 출입통제
기타	⑬ 화재·폭발	용접장치, 전기설비, 위험물질·폭발 사고 예방 조치 등	⑭ 그 밖의 위험요인 안전조치	밀폐공간 안전조치 등

○ 참고사항

【위험성 감소대책의 적정성】

- ① 유해·위험요인 및 기술적 대책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 사례> (위험요인) 외부비계 정면 작업발판 2단에서 벽체 면처리작업 시 개구부 추락위험 ⇒ (대책) 추락위험 개구부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불가피 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
- ② 유해·위험요인을 누락하지 않았을 경우
- ③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였을 경우
 ※ 관리적 사항(교육 및 보호구 관련 대책 제시 등)만 제시한 경우는 불인정

확인사항

☐ 기술지도 현황, 기술지도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B

업무 충실성(550점)

1. 위험성 평가

③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실적 및 TBM 활성화 지도 (배점 50점, 지도사 75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개선율이 90% 이상인 경우	☐ 1.0
개선율이 80% 이상 ~ 90% 미만인 경우	☐ 0.8
개선율이 70% 이상 ~ 80% 미만인 경우	☐ 0.6
개선율이 60% 이상 ~ 70% 미만인 경우	☐ 0.4
개선율이 60% 미만인 경우	☐ 0.2

지표정의

기술지도 현장의 기술지도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여부의 적정성을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년도 기술지도 현장 중 선정(기술지도 현장 수에 따라 2개소 이상) 하여 현장 방문 확인
 - 방문현장은 기관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및 미만에서 각 1개소 이상을 우선 선정하되, 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대상 조정 가능

○ 방문현장 우선선정 기준

현장 방문 우선 선정 기준(예시)

- ① 최근 3년 이내 사망사고 또는 1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현장
- ② 사망사고다발 기인물(개구부, 철골, 지붕 등) 보유 현장
- ③ 고위험작업(철골, 지붕, 달비계, 고소작업대 등)
- ④ 평가 시점에서 공정을 40% 이상 80% 미만
- ⑤ 불량사업장 통보 현장

- 건설현장의 기술지도결과보고서, 현재 공정, 건설기계·장비 등의 위험성 감소대책을 파악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결과 전달 및 TBM 실행 여부를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매년 판단기준(필수항목)을 선정하여 평가
 - * 판단기준(필수항목) 선정 시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와 협의 선정
- 평가일 기준 현장방문대상 사업장이 없는 기관의 경우 본 지표는 결측처리 후 업무 충실성 분야 내에서 환산하여 득점 반영
 - ※ 환산득점은 소수점 이하 버림

☐ 평가 산식

- 대상 현장을 방문하여 판단기준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개선 건수를 산출하여 평가
 - 판단기준에 대한 기술지도가 누락된 경우 "미개선"으로 평가
 - 판단기준에 해당 없을 경우 "개선"으로 평가
- ※ (예) A사업장 5개, B사업장 4개 개선한 경우 $\Rightarrow \{(5+4)/(9 \times 2)\} \times 100 = 50\%$ 로 "0.2점"
- $\therefore 0.2\text{점} \times 100\text{점} = 50\text{점}$ 부여

< 다음 장 계속 >

□ 판단 기준

- 선정 현장에 필수항목이 해당 없을 시 "적정"으로 평가
 - 「작업전 TBM(안전점검 회의) 실시 여부」 및 「위험성 평가 결과 현장 근로자 공유 여부」는 지도여부 및 면담결과가 확인될 경우, "적정"으로 평가

구분	위험성 감소대책 필수항목	개선	미개선
합 계			
1	단부, 개구부, 철골 안전조치(추락)		
2	비계(이동식비계, 달비계, 사다리 등), 작업발판, 지붕 안전조치(추락)		
3	거푸집 및 동바리(붕괴)		
4	건설 기계·장비 안전조치(충돌, 협착) *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 등		
5	용접장치, 전기설비, 위험물질*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화재/폭발) *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6	그 밖에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7	MSDS, 밀폐공간, 폭염 등에 대한 보건조치		
구분	위험성평가 및 TBM 필수항목	지도여부	면담결과
8	작업전 TBM (안전점검 회의) 실시 여부		
9	위험성 평가 결과 현장 근로자 공유 여부		

* 용접, 방수, 도장 공정 시 사용하는 주요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필요

○ 판단 기준 착안사항

- ① 현장 및 기술지도 개요가 현장과 불일치 여부 확인
- ② 기술지도결과보고서 내용과 현장 공정이 불일치 여부 확인
- ③ 기술지도 회차별 재해예방대책(향후 공정 포함) 기술지도 내용 및 이행이 미흡 여부
- ④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의 미흡 여부
- ⑤ 현장에서 보관 중인 보고서와 K2B에 등록된 보고서가 불일치할 경우 등
- ⑥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상 작업전 TBM 실시 및 위험성평가 결과 근로자 공유에 대한 사항 포함 여부(현장 관련문서 비치여부 확인)

확인사항

- 기술지도 현장 재해발생 현황, 기술지도결과보고서 등

B

업무 충실성(550점)

1. 위험성 평가	④ 근로자 교육 등 유해·위험요인 관리의 적정성 (배점: 100점)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																			
기술자료 및 현장교육 (배점: 40점)	기술자료 배포 및 현장교육 실시에 따라 점수 부여		___점																
재정지원사업 연계 (배점: 40점)	재정지원사업 연계 (건수 x 2점)		___점																
장비 활용 실적 (배점: 20점)	장비 활용실적 산정표에 따라 점수 부여		___점																
지표정의																			
다양한 기술자료 배포와 근로자 교육·장비활용 및 재정지원사업 안내 등 유해·위험요인 관리를 통한 충실한 기술지도 유도																			
평가내용																			
1) 기술자료 및 현장교육																			
□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자료로 현장교육을 실시한 사업장 수(개소) 및 기술자료 수(종)을 확인 ○ 기술자료 배포 현장(최소 10개소)을 샘플링하여 기술자료 배포대장과 해당 자료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 배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3종 미만 기술자료 배포 사업장이 30% 미만일 경우, 점수 미부여 																			
□ 평가 산식[최대 40점]																			
<table border="1"> <tr> <th>기술자료 수 제공 지도사업장 비율</th> <th>3종 미만</th> <th>3종 이상 4종 미만</th> <th>4종 이상</th> </tr> <tr> <td>기술지도 사업장의 50% 이상</td> <td>20</td> <td>30</td> <td>40</td> </tr> <tr> <td>기술지도 사업장의 30% 이상, 50% 미만</td> <td>5</td> <td>10</td> <td>20</td> </tr> <tr> <td>기술지도 사업장의 30% 미만</td> <td>-</td> <td>5</td> <td>10</td> </tr> </table>				기술자료 수 제공 지도사업장 비율	3종 미만	3종 이상 4종 미만	4종 이상	기술지도 사업장의 50% 이상	20	30	40	기술지도 사업장의 30% 이상, 50% 미만	5	10	20	기술지도 사업장의 30% 미만	-	5	10
기술자료 수 제공 지도사업장 비율	3종 미만	3종 이상 4종 미만	4종 이상																
기술지도 사업장의 50% 이상	20	30	40																
기술지도 사업장의 30% 이상, 50% 미만	5	10	20																
기술지도 사업장의 30% 미만	-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는 책자, OPL, 포스터 형태로 (고용노동부·공단에서 제공한 자료 인정) 직접 전달하고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현장교육이 실시된 경우에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법령 요지·비상연락망 등의 포스터 및 온라인 제공 등은 인정 제외 																			
□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필수 기재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술자료 명칭 ② 기술자료 제공 수(종류) ③ 교육실시 내용 ④ 교육실시 인원(사진 필수) ※ 4가지 사항이 모두 보고서에 기재된 경우에만 기술자료 배포 및 교육실적으로 인정 - 기술자료 배포대장과 샘플링 결과가 20% 이상 불일치 할 경우 점수 미부여 																			

< 다음 장 계속 >

2) 재정지원사업 연계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 기간에 기술지도를 실시한 사업장과 보조금 **지급완료**된 재정지원사업장을 비교하여 평가
 - 평가 인정 사업은 공단의 재정지원 전체 사업에 해당함

□ 평가 산식[최대 40점]: 재정지원사업 연계 건수 x 2점

□ 평가 기준

- 공단에서 사전자료를 제출 받아 지급완료된 사업장 실적을 확인하여 점수 확정
 - ※ 기관에서 사전자료 제출 기한 내 확인된 자료만 인정
- 평가 대상기관의 소속 지부(회) 및 출장소 등 평가 대상기관 개별 평가

3) 장비 활용 실적

□ 평가 방법

-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지도한 사업장 수(개소) 및 장비의 수(종)를 확인
- 장비활용 기술지도 현장(최소 10개소)을 샘플링 하여 장비사용대장과 법정 장비 사용 실적 확인
 - 장비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3종 미만 장비를 활용한 사업장이 30% 미만일 경우, 점수 미부여

□ 평가 산식[최대 20점]

활용 지도사업장 비율 \ 활용 장비 수	3종 미만	3종 이상 4종 미만	4종 이상
기술지도 사업장의 50% 이상	10	15	20
기술지도 사업장의 30% 이상, 50% 미만	5	10	15
기술지도 사업장의 30% 미만	-	5	10

- 활용 장비 수: 샘플링 사업장에서 활용한 장비 수

□ 평가 기준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필수 기재사항 확인
 - ① 측정 장소 ② 측정 기준 ③ 측정값 ④ 기술지도 내용(적합여부, 부적합 시 개선대책 명시)
 - ※ 4가지 사항이 모두 보고서에 기재된 경우에만 활용실적으로 인정
- 장비사용대장과 샘플링 결과가 20% 이상 불일치 할 경우 점수 미부여

확인사항

- 장비사용대장, 기술자료 배포대장,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B

업무 충실성(550점)

2. 위험요인 관리		① 기술지도 보고서의 적정성 (배점: 50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기술지도보고서 양식 및 내용 표준화의 적정성 (배점: 25점)	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90% 이상	☐ 1.0	
	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80% 이상 90% 미만	☐ 0.8	
	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60% 이상 80% 미만	☐ 0.6	
	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40% 이상 60% 미만	☐ 0.4	
	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40% 미만	☐ 0.2	
기술지도보고서의 사업장 통보 실적 (배점: 25점)	사업장 통보 누락이 없는 경우	☐ 1.0	
	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5% 미만	☐ 0.8	
	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5% 이상 10% 미만	☐ 0.6	
	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10% 이상 15% 미만	☐ 0.4	
	평가 산식에 따른 비율 15% 이상	☐ 0.2	
지표정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양식 및 내용 표준화를 통해 전반적인 기술지도 수준 향상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도 사업장을 샘플링(최소 10개소 이상)하여 결과보고서에 필수 반영사항 작성 여부 및 통보 실적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샘플링 사업장은 지도요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작위로 선정 ※ 샘플링 현장은 [B.1.③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실적 및 TBM 활성화 지도] 방문 대상 현장 필수 반영 			
☐ 평가 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보고서 비율 = $\frac{\text{표준화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text{샘플링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 \times 100$ 			
< 다음 장 계속 >			

□ 평가 기준

- 보고서 양식에 필수 반영사항 포함 여부 및 기술지도 내용 작성 여부 확인
 - 작성란은 있으나 기술지도 내용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0.5개 인정

필수 반영 사항

- ① 사업장 개요(사업장 및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개시번호), 공사 금액 및 기간)
- ② 기술지도 개요(공정율, 현장책임자, 기술지도 회차 등)
- ③ 기술지도 방문 시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 대책
- ④ 향후 공종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 대책
- ⑤ 사업장 지원현황
- ⑥ 지난 기술지도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통보 대상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단 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소장) 등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 사업장 담당자 및 소장 서명, 단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의 통보여부 증빙 확인(7일 이내)
 - 평가 당일 사업장 방문계획에 따라 방문하는 사업장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는 제외(단, 평가 완료시점까지 점검 후 복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

□ 평가 산식

$$\text{사업장 통보 누락율} = \frac{\text{누락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text{샘플링 사업장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 \times 100$$

확인사항

- 기술지도 사업장 현황, 기관 제출 증빙자료, 기술지도결과보고서, K2B 전산자료 등

B

업무 충실성(550점)

2. 위험요인 관리	② 향후 공정 재해예방대책 적정성 등 (배점: 50점, 지도사 75점)	
평가 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향후 공정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이 모두 타당한 경우		☐ 1.0
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이 5% 미만		☐ 0.8
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이 5% 이상 10% 미만		☐ 0.6
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이 10% 이상 15% 미만		☐ 0.4
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이 15% 이상		☐ 0.2
지표정의		
기술지도 후 다음 기술지도 사이 실시예정인 향후 공사에 대하여 타당하고 적합한 재해 예방 대책 수립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도 사업장을 샘플링(최소 10개소 이상)하여 개선대책의 적정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샘플링 사업장은 지도요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작위로 선정 ※ 샘플링 현장은 [B.1.③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실적 및 TBM 활성화 지도] 방문 대상 현장 필수 반영 ○ 선정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중 향후 공정 재해예방대책이 미흡한 개수를 산출하여 평가 		
☐ 평가 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예방대책 미흡 비율 = $\frac{\text{재해예방대책 미흡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text{샘플링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수}} \times 100$ 		
☐ 평가 기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미흡 기준</p> <p>① 공정률이 90%미만임에도 향후 재해예방대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p> <p>② 진행 공정과 무관한 재해예방대책을 명시한 경우</p> <p>③ '난간대 설치', '교육 실시' 등 단순 개괄적인 대책만 제시한 경우</p> <p>④ 관리적 사항(교육 및 보호구 등)으로만 기재된 경우</p> </div>		
확인사항		
☐ 기술지도 사업장 현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B

업무 충실성(550점)

2. 위험요인 관리 ③ 위험성 감소대책 미이행 사업장 관리 (배점: 10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연계율 연간 월별 4% 이상인 경우	☐ 1.0
연계율 연간 월별 3% 이상 4% 미만인 경우	☐ 0.8
연계율 연간 월별 2% 이상 3% 미만인 경우	☐ 0.6
연계율 연간 월별 1% 이상 2% 미만인 경우	☐ 0.4
연계율 연간 월별 1% 미만인 경우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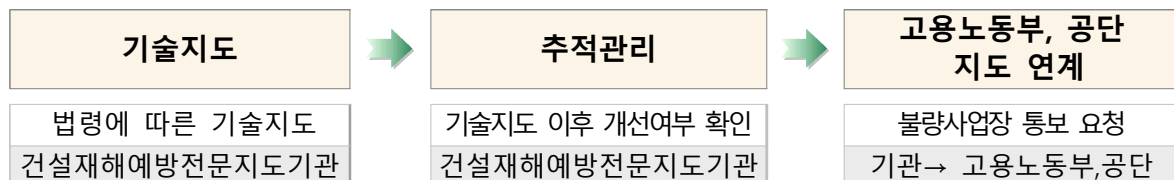
지표정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불량 현장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는 원칙 확산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K2B 입력하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 요청한 불량현장 지도 연계 실적 (적기에 불량현장 지도를 위하여 기술지도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
※ 연계 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반려 및 발주자 신고 실적 제외
- 불량현장 지도 연계 실적 샘플링(10건) 결과, 연계 대상 외 신고 및 사유 불분명 등 신뢰성 없는 실적이 10% 이상 확인될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 평가 기준

- 평가 산식

$$\text{연계율 (소수점 이하 절사)} = \frac{\text{월별 지도 연계 사업장 수}}{\text{월별 기술지도 사업장 수}} \times 100$$

- * 기술지도 사업장수: 평가기간 동안 계약 유지 현장 기준(전년도 이월 현장 포함)
- * 지도 연계 사업장수: 사업장 기준(동일현장 지도 반복 요청 포함하되 월 4% 이상인 경우 연계 현장 수는 다음달 연계 현장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예시): 1월 5% 2월 4% 3월 3% 4월 5%의 경우, 연계율 평가산식 적용은 아래와 같음

$$\text{연계율}^* = (1\text{월 } 4\% + 2\text{월 } 4\% + 3\text{월 } 3\% + 4\text{월 } 4\%) / 4 = 3.75\% \approx 3\% \text{ 이상 } 4\% \text{ 미만으로 적용}$$

- * 월별 4% 이상 지도 연계율은 최대 4%로 적용하며, 각 월별 합산 시 평균으로 적용되지 않음 (월별 기술지도 사업장수는 기술지도일 기준, 월별 지도 연계 사업장 수는 신고일자 기준임)

< 다음 장 계속 >

연계 대상

- ① 연계 대상 : 급박한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개선의지가 없는 불량현장
- ② 급박한 위험요인
- 지붕 개·보수, 외부도장, 옥상방수, 철거, 리모델링, 사고사망 다발 기인물(지붕, 개구부, 비계[달비계 포함], 이동식 사다리)사용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 추락(작업 발판·안전난간·개구부 덮개 불량) 위험
 - 산소결핍, 질식, 중독 우려가 있는 위험장소에서 불량하게 작업을 할 경우
 - 화재, 폭발, 독성가스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구조물 노후 등으로 인해 붕괴, 도괴 위험이 있는 경우 등
-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지도사항에 ①위험 작업에 따른 ②위험요인 ③개선대책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함

확인사항

☐ K2B 전산 입력 결과, 기관의 기술지도 현장 신고현황 등 증빙자료

C

업무성과(250점)

1. 재해감소		① 사고사망 만인율 감소 성과 (10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내에 업무상 사고사망자가 없는 경우		☐	1.0
사고사망만인율 50% 이상 감소한 경우		☐	0.8
사고사망만인율 25% 이상 ~ 50% 미만 감소한 경우		☐	0.6
사고사망만인율 25% 미만 감소한 경우		☐	0.4
사고사망만인율이 3년 가중 평균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한 경우		☐	0.2
지표정의			
기술지도 효과성·현장 작동성을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정량지표			
평가내용			
☐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기술지도 건설현장 현황을 K2B에서 받아 산업재해 공식(잠정)통계로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을 산출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 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및 지도 소홀에 기인하지 않는 사고사망자*는 제외 * 단, 2건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없이 사고사망자 산입 ○ 집계: 사망승인일이 평가대상 기간 중에 있는 기술지도사업장의 업무상사고 사망자 			
☐ 평가 산식 $\text{감소율} = \frac{\text{평가대상기간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 A}{\text{평가대상기간 전 3년간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A)}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가중평균 연도별 비중(전년:전전년:전전전년 = 0.5:0.3:0.2) * 공식통계(사망승인일 기준), 만인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반올림 * 사고 발생일이 기술지도계약일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된 사고사망자는 산입 제외 			
확인사항			
☐ 기술지도사업장 현황, K2B자료, 공식(잠정) 통계, 고용부 감독 등 증빙자료			

C

업무성과(250점)

1. 재해감소		② 사고사망 만인율 수준 (10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평가대상 기간 내에 업무상 사고사망자가 없는 경우		☐	1.0
만인율 수준이 상위 20% 이상인 경우		☐	0.8
만인율 수준이 상위 50% 이상인 경우		☐	0.6
만인율 수준이 상위 80% 이상인 경우		☐	0.4
만인율 수준이 상위 80% 미만인 경우		☐	0.2

지표정의	기술지도 효과성·현장 작동성을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정량지표
평가내용	<p>☐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기술지도 건설현장 현황을 K2B에서 받아 산업재해 공식(잠정)통계로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을 산출하여 평가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 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및 지도 소홀에 기인하지 않는 사고사망자*는 제외 * 단, 2건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없이 사고사망자 산입 ○ 평가대상 기간 사고사망이 있는 기관 중에서 수준 범위 산정 ○ 집계: 사망승인일이 평가대상 기간 중에 있는 기술지도사업장의 업무상사고 사망자 <p>☐ 평가 산식</p> $\text{사고사망만인율} = \frac{\text{기술지도사업장 업무상 사고사망자수의 합}}{\text{기술지도사업장 전체 근로자수의 합}} \times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통계(사망승인일 기준), 만인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반올림 * 사고 발생일이 기술지도계약일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된 사고사망자는 산입 제외
확인사항	<p>☐ 기술지도사업장 현황, K2B자료, 공식(잠정) 통계, 고용부 감독 등 증빙자료</p>

C

업무성과(250점)

2. 만족도		① 사업장 만족도 (배점 :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95점 이상인 경우		☐	1.0
만족도 조사결과 90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		☐	0.8
만족도 조사결과 85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		☐	0.6
만족도 조사결과 80점 이상~85점 미만인 경우		☐	0.4
만족도 조사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	0.2
지표정의			
기술지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현장의 만족도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기관의 평가년도 수행현장 현황을 K2B에서 내려받아 평가 ○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결과 점수에 따라 평가 			
☐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만족도 조사 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불량현장으로 고용노동부·공단에 통보 후 연계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 기술지도 실적은 있으나 전체 응답이 없는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포함)에 기술지도 업무관련 진정서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최하점수(10점)로 평가 			
확인사항			
☐ 외부 리서치 전문업체 설문조사 결과			

D

가·감점(±100점)

1. 가점	① 포상, 기관별 우수사례 및 적정 수수료 등 (+100점)		
평가기준		최고점	평가결과
총점 (가점)			
1) 안전 관련 정부·지자체·공단 포상 여부		20점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참여도		30점	
3) 고위험공사 계약 비율		20점	
4)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정기 통보 우수사례		20점	
5) 적정 수수료 계약율		10점	
지표정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우수사례 발굴·가점 반영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			
평가내용			
□ 평가 방법			
1)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표창장 제출로 평가			
포상 훈격별 점수 기준			
포상 내역	가점	포상수	총점
총 합			
차관급 이상	15점		
차관급 미만	10점		
<p>※ 차관급 이상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도지사, 공단 이사장, 국회의원</p> <p>※ 차관급 미만 : 고용노동부차청장, 공단(교육원장, 인증원장, 연구원장, 본부장, 지사장), 지자체(시·도·군·구)</p> <p>※ 기관 또는 수행인력이 두가지 이상 지정받은 경우 중복 인정 불가</p>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참여도			
- 안전문화 확산 활동(최대 30점, 다음 5가지 사례의 득점 합계로 평가)			
연번	인정 항목	제한횟수	가점
1	민간재해예방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사전심의 상위 10% 기관	1	+10
2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포럼·세미나 주제발표	1	+10
3	정부·지자체 등 주관 취약시기(폭염, 동절기 등) 안전보건활동 참여	1	+5
4	산업안전 관련 고용노동부 및 공단 세미나·정책회의 참여	3	+5
5	법정인력 전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분야 외부전문교육 이수(8hr 이상)	1	+10
※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공문, 사진 등 증빙 제출·확인된 경우만 인정하며 항목별 중복 불인정			
< 다음 장 계속 >			

3) 고위험공사 계약 비율

- 기관의 평가 대상기간 내 계약을 체결(대상기간 전 이월현장 제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한 고위험공사 사업장 현황을 사전제출 받아 평가
- 인정기준에 따라 단일공사이거나 2가지 이상 작업이 포함되는 공사의 경우만 인정*되며 신축공사 등 전체 작업을 포함한 공사는 불인정

*(예시) "00공장 신축공사: 인정불가", "00공장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인정"

※ 산재관리번호 및 산재개시번호에 따라 생성된 공사명에 따라 인정되며 임의 수정 제출 시 가점 미부여

고위험공사 인정기준

공사명	정 의	인정범위*	비 고
지붕 개·보수	지붕종류, 재질 등과 무관한 지붕 관련 모든 작업	지붕 상부에서 지붕 개보수, 설치해체 등의 작업 또는 자재 운반 등의 부대작업을 하는 경우(태양광공사 포함)	철근콘크리트 지붕 제외
외부도장	건물 등의 외부 도장(색)작업 및 부대작업	달비계, 고소작업대, 이동식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을 사용해서 도장(색)작업 또는 부대작업(균열 보수, 홈메우기, 먼정리작업 등)을 하는 경우	외부도장과 유사작업 포함
철거·해체 및 리모델링	(철거·해체)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	① 건축물 또는 구조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 ②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기둥이나 보 등이 포함된 구조부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③ 철거 중인 건축물 단부에서 근로자가 살수작업 등으로 추락위험에 노출된 경우	-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해 하는 작업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 대수선, 증·개축 등은 건축법 기준 준용	바닥 벽 천장의 마감재 변경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제외

* 최근 3년 사고사망 발생개요 및 기인물 분석 등을 통해 고위험공사의 인정범위 결정 시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와 협의에 따라 선정

□ 평가 산식

- 평가대상 기간 내 고위험공사 기술지도 사업장

$$\frac{\text{고위험공사 기술지도 계약율}}{\text{기술지도 사업장 수}} = \frac{\text{고위험공사 기술지도 사업장 수}^*}{\text{기술지도 사업장 수}} \times 100$$

*평가대상 기간 내 기술지도 실적이 있는 사업장(계약 후 기술지도 실적이 없을 경우 불인정)

※ K2B 수행사업장 현황 및 샘플링(10건) 실시하여 10% 이상 누락되거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제출 등으로 신뢰성이 없을 경우, 가점 미부여

< 다음 장 계속 >

- 4) 기관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건설업체 본사 정기 통보* 우수사례는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건설공사 중 분기별 확인요청서 및 결과보고서를 사전 제출받아 평가**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수정)」 의거, "지도기관→건설업체 본사"로 공문으로 제출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요청서[서식4], 결과보고서 및 그 외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컨설팅 자료 등 제출 시 인정

** 평가방식은 B.업무 충실성 평가지표 준용하여 별도 실시(세부기준 추후 공지)

※ 50억 미만 건설공사 중 제출한 본사 정기 통보 실적도 인정하되, 3개월 미만 공사로 분기 1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평가 비대상으로 가점 미부여

- 5) 전국 평균 수수료(기술지도 대가) 계약 금액 대비 해당 기관의 평균 수수료 계약 금액이 90% 이상인 경우 10~30점까지 가점 차등 부여

가. 평가 전 기관이 평균 기술지도 대가를 K2B 전산에 입력하여 전국 평균 기술지도 대가를 공사금액별*로 산출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23년 적정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 개선]

<<공사금액별 기술지도 대가 산출 구간>>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공사금액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나. 기관별 관리하고 있는 기술지도 사업장 90% 이상 기술지도 대가를 입력하여 평균 기술지도 대가를 산정한 경우에 인정 가능

다. 전산 입력한 기관별 평균 기술지도 대가의 신뢰성은 평가 당일 평가반이 기관에서 5개~10개 사업장을 샘플링하여 확인하고 신뢰성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가점 불인정

※ 기술지도 대가 입력 기준일은 평가대상 기간 내 계약일 기준으로 하고, 12월 31일 까지 입력 분에 한함

□ 평가 산식

- 적정 수수료 계약율(기술지도 대가 적정율) 산식

$$\text{기술지도 대가 적정율} = \frac{\text{해당 기관 공사금액별 평균 기술지도 대가 금액}}{\text{공사금액별 전국 평균 기술지도 대가 금액}} \times 100$$

평가 기준

- ① 기관별 제출한 기술지도 1회당 평균 기술지도 대가를 기초로 공사금액별 전국 평균 기술지도 대가 산출
- ② 전국 평균 기술지도 대가 대비 기관의 평균 기술지도 대가에 따른 가점 부여

구 분	전국 평균 대비 90% 이상	전체 평균 이상
가 점	5	10

※ 건설/전기통신 지정분야별로 평균 기술지도 대가를 산출하여 각 평가

- 해당 기관의 사업장수 및 평균 대가를 공사금액별로 산출하여, 전국 평균 기술지도 대가 대비 구간별 보유 사업장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

※(예시) A기관이 100개의 사업장(1구간 30개소, 2구간 20개소, 3구간 40개소, 4구간 10개소)에 대하여 1구간 적정율 90%, 2구간 100%, 3구간 110%, 4구간 80%인 경우,

$$\rightarrow (90\% \times 0.3) + (100\% \times 0.2) + (110\% \times 0.4) + (80\% \times 0.1) = 99\% \quad \therefore 99\% = 5점 부여$$

확인사항

- 표창장, 기술지도결과보고서 및 확산활동 증빙 및 위험성평가 인정서 등

D

가 · 감점(± 100점)

2. 감점	① K2B 부적정률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100점)	
평가기준 총점 (감점)	최저점	평가결과
1) K2B 부적정 입력률	-40점	
2)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100점	

지표정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법 사항에 대한 징벌적 불이익을 부여하고 K2B 입력 정확도에 대한 책임 유도를 통한 체계적 기술지도 성과 관리 정착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1) K2B 입력 현황 기준, 지연 · 누락 또는 오류가 확인된 기술지도 보고서의 입력 부적정 건수를 산출하여 평가

평가 기준

- ① 입력 부적정 건수
 - 기한 내에 기술지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기술지도보고서가 누락되어 제출된 경우
 - 사업장 특정 정보(사업장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누락 또는 오기
- ② 방문 평가 시 기술지도사업장 입력 누락이 확인된 경우 "-40점" 부여

가. K2B 입력 부적정률 계산식

$$\text{K2B 입력 부적정률} = \frac{\text{입력 부적정 건수}}{\text{기술지도 보고서 제출 필요 건수}} \times 100$$

※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단일 사유(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입력 부적정 건수"에 미산입

※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버림

나. 부적정률에 따른 감점 수준

K2B 입력 부적정률	감점
K2B 입력 부적정 건이 없는 경우	0점
K2B 입력 부적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10점
K2B 입력 부적정률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20점
K2B 입력 부적정률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30점
K2B 입력 부적정률이 3.0% 이상인 경우	-40점

< 다음 장 계속 >

2) 평가대상기간 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 조치·경고 행정처분 수준 평가

가. 지도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도업무를 차질을 일으킨 경우 회 당 -20점 감점

나. 시정조치·경고 행정처분 건 당 -15점 감점

평가 기준

- 평가대상 기간 내 업무정지·시정조치·경고처분에 따른 처분 확정일을 기준
- 지사(출장소 등)를 운영하는 기관은 행정처분 실적 합산하여 평가

확인사항

☐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 관련 실적 및 기관 제출 실적, K2B 입력 실적을 현장 평가 시 확인 등